

연금취급기관장(제11조제1항 본문 관련)

구분	연금취급기관장
1. 입법부	국회사무총장, 국회도서관장, 국회예산정책처장, 국회입법조사처장
2. 사법부	법원행정처장, 각급 법원 및 법원 지원(支院)의 장
3. 행정부	가.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.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 다.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 라. 대학의 장, 교육감, 교육장 마. 각 군 참모총장
4. 헌법재판소	사무처장
5. 선거관리위원회	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

※ 비교: 국내에서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국외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.